

## 부록 2-가-1

### 대한민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의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규정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HSK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수량의 영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제2.7조제7항 및 이 부록의 제5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7월 1일 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전에 발효되는 경우, 그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되는 TRQ 물량은 그 연도의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축소된다. 제2.7조제7항 및 이 부록의 제5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7월 1일 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전에 발효되는 경우, 그 연도에 관련된 허가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첫 번째 영업일부터 운영된다.

####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

3. 대한민국은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해서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 영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 3)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 4)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영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 가) 대한민국이 가호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가호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 국영무역기업

4.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영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맥아 및 맥주맥

5.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 연도 | 물량(메트릭톤) |
|----|----------|
| 9  | 1,521    |
| 10 | 1,567    |
| 11 | 1,614    |
| 12 | 1,662    |
| 13 | 1,712    |
| 14 | 1,764    |
| 15 | 1,816    |
| 16 | 무제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003.00.1000 그리고 1107.10.0000.

보조사료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 연도 | 물량(메트릭톤) |
|----|----------|
| 9  | 609      |
| 10 | 627      |
| 11 | 646      |
| 12 | 665      |
| 13 | 무제한      |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은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개월 동안 수입한 다호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2”에 따라 철폐된다.
-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그리고 2309.90.9000.